

2021년 2월 17일 노동부,
경비원 등과 관련한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발표

감시·단속적 근로

개선방안 발표 주요내용

- 승인 유효기간 **3년으로 설정** 등 관리체계 정비
- 휴식권 보장 강화 - 휴게시설, 휴무일 보장 등
- 감시적 근로 승인기준 마련 추진 - 경비원이 청소 등을 겸하는 경우
- 근무체계 개편 유도 - 장시간 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일정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지침」(훈령) 제정(~'21.6월) 등 관련 규정 제·개정 추진

감시·단속적 근로의 개념(근기법 시행규칙 제10조)

- **감시적 근로자**: 감시업무를 주로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ex. 경비원, 물품감시원, 청원경찰 등)
- **단속적 근로자**: 근로자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ex. 임원 운전기사, 설비기사 등)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사용자는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시 ·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및 적용규정

	적용제외 규정	적용되는 규정
주요 내용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근기법 제63조) 1. 주40시간, 1일 8시간(근기법 제50조) 2.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3. 연장근로의 제한(근기법 제53조) 4. 휴게시간(근기법 제54조) 5. 주휴일 부여(근기법 제55조) 6. 근로시간 계산 등의 특례(간주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근기법 제58조) 7.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근기법 제56조) 8. 연소자의 근로시간 제한(근기법 제69조) 9.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근기법 제71조)(주6시간, 1일 2시간, 1년 150시간)	1. 야간근로 가산임금 지급 2. 여성근로자, 임산부, 18세 미만의 야간근로 금지규정 3. 연차유급휴가 4. 생리휴가 5. 임산부 보호 및 출산전후휴가제도 6. 육아시간 부여 7. 근기법 제4장 및 제 5장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